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목 차>

1.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작성 자	이름	구은종
	담당부서 (과)	안전개선과		직급	사무관
	국장	예방정책국장		연락처	044-205-4212
	과장	안전개선과장		이메일	gej@mail.go.kr

2023. 11. 13.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2.규제조문	개정안 제2조 별표2														
	3.위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2.01~2024.03.1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법령은 주택단지, 공원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정하고, 이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등 공공성이 높은 그 외의 장소에도 확대 설치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 장소 유형 확대 필요														
	7.규제내용	과학관, 수목원·정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법 적용대상 장소유형에 추가 규정하여 법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업체) 및 관리주체(법적용 확대 어린이놀이시설) <table><thead><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head><tbody><tr><td>피규제자</td><td>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업체)</td><td>어린이놀이시설 제작업체 1,000여개(안전인증 취득)</td></tr><tr><td>피규제자</td><td>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법적용 확대 대상)</td><td>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장 등 전국 5천여개 시설 관리자</td></tr><tr><td>이해관계자</td><td>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어린이, 학부모 등)</td><td>확대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학부모 등(정량적 규모 산출은 어려움)</td></tr></tbody></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업체)	어린이놀이시설 제작업체 1,000여개(안전인증 취득)	피규제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법적용 확대 대상)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장 등 전국 5천여개 시설 관리자	이해관계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어린이, 학부모 등)	확대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학부모 등(정량적 규모 산출은 어려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업체)	어린이놀이시설 제작업체 1,000여개(안전인증 취득)													
피규제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법적용 확대 대상)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장 등 전국 5천여개 시설 관리자														
이해관계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어린이, 학부모 등)	확대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학부모 등(정량적 규모 산출은 어려움)														
9.규제목표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대상을 다수 인원이 방문하고 공공성이 큰 장소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해당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 이용자(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 향후 해당 장소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검사 및 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이며, 현재 확대대상 장소 유형중 놀이시설 설치 현황(170여개소/5천여개)을 고려시 기존 설치된 놀이시설과 관련해서도 전체 규제비용은 크지 않음														

		것으로 예상됨 편익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 이용중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u>어린이놀이기구</u> (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기구 1. ~ 16. (생략)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 20. (생략) < 신 설 >	[별표 2] <u>어린이놀이기구</u> (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기구 1. ~ 16. (현행과 같음) 17.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18. ~ 20. (현행과 같음) 21. 「과학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및 같은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정원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2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현행 법령은 주택단지, 공원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제품안전인증 취득)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적용, 검사(설치·정기), 관리주체의 점검(월별),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사고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한 20가지 장소 유형을 그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 전국 놀이시설 현황 (단위: 개소수, '23.12월 기준)

총계		81,502	
주택단지	43,234	학원	111
도시공원	11,750	의료기관	30
어린이집	7,759	도로휴게시설	34
학교	6,801	주상복합	272
유치원	7,505	공공도서관	47
식품접객업소	1,254	종교시설	329
놀이제공영업소	1,297	박물관	80
대규모점포	83	하천	75
아동복지시설	379	자연휴양림	122
목욕장업소	64	야영장	149
육아종합지원센터	101	유아교육진흥원	27

○ 최근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등 공공성이 높은 그 외의 장소에도 확대 설치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라 하더라도 설치된 장소가 법정 대상장소가 아니면 등록신고 및 설치검사 등의 의무가 없음

□ (필요성) 과학관, 수목원 등의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하고 공공성이 높은 장소임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현행 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실시('22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 현행 대상 장소유형 유지

- 현행 20개 장소유형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 규제대안1 >

☐ 장소유형 추가 확대

- 과학관·수목원 등 4개 장소유형을 안전관리 대상 장소유형에 신규 포함, 다수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1 선택

- 제도개선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검토 결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다수 이용객으로 공공성이 큰 장소유형에 한해 안전관리 확대 적용이 필요
- 장소유형별 안전관리 필요성
 - (과학관)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이며, 어린이 및 청소년이 방문객의 절반을 차지
 - (수목원)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등 체험·놀이시설을 도시공원·휴양림·수목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22-'27 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
 - (정원)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원 지정·조성이 활발하며, 이중 다수의 정원이 정원내 놀이터를 포함하거나 어린이정원을 테마로 신규 정원 조성 추진(대전, 광명, 상주 등)

- (유원지) 주민 위락·휴양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놀이시설이 설치된 시설이 전체의 30%에 해당
- (공공하수처리시설) 최근 도시화로 인한 주변 개발 및 (점점 도심에 편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 증가로 시설 개축(복개, 지하화 등)과 연계하여 상부공간을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친화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

※ 관련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내 주민친화시설 조성이 확대 추세('20년 553개 → '22년 564개)이며, 이중 어린이놀이시설도 증가 추세(활용면적 '20년 96,691㎡ → '22년 98,201㎡)(환경부 하수도 통계)

: '23.12월 기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4,397개) 중 30개 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지자체별 실태조사)

※ 현행법상 관리대상 의무장소가 아니어서 사고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어려움에 따라 신규장소 유형으로 포함 건의(경기, 충북)

-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부칙 규정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적용의 유예기간(최대 2년)을 두어 시행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2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u>어린이놀이기구가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u>(이하 “<u>새로포함된시설</u>”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u>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새로포함된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u>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포함된시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새로포함된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2.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것 ②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초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소관부처, 지자체 등	[개정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 ○ (일자) '23. 9. 12. / 세종청사 ○ (참석) 과기부, 산림청, 서울, 경기, 충북, 검사기관 등	유원지도 장소유형에 추가 필요	<수용> 유원지 추가 (소관부처 협의)
소관부처, 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 (일자) '23. 9. 13. ~ 9.18 / 서면 ○ (대상) 과기부, 산림청, 지자체 등	장소유형 추가 확대 필요(9.19)	<일부수용> 공공하수처리 시설 추가
소관부처, 지자체 등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 (일자) '23. 10. 16 ~ 10. 26 / 서면 ○ (대상) 부처, 지자체 등	의견 없음	-
소관부처, 지자체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일자) '23.11.21 ~ '24.1.2 ○ (대상) 부처, 지자체 등	의견 없음	-

○ 장소적 범위 추가확대 의견(9.19, 경기도)

- 13호 항목(놀이제공영업소)에 대한 조문 수정*으로 신종 업종인 공간대여업 및 키즈펜션 등 포함 필요

* (현행)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수정의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자의 영업소

-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함

⇒ (행안부 검토의견) 일부 수용

○ 최근 놀이시설을 포함한 주민친화시설이 활발히 설치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정내용에 추가 포함

* 공간대여업의 경우 대상범위의 명확한 규정에 한계가 있으며, 조문 수정시 안전관리범위가 더욱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추가적인 검토 필요)

3. 규제목표

불특정다수가 이용가능하고 공공성이 강한 과학관,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어린이가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 가능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안전관리의 필요성(불특정 다수의 어린이 이용, 공공성(publicity)) 및
현행 법적용 대상 장소유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 공공성에 입각하여 현행 법적용 대상시설에 준한 안전관리의 필요
성이 있는 장소유형으로 법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에 대한 과도한 부담 및 집행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확대되는 장소유형중 놀이시설이 설치되는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규제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1년, 기존 설치된 놀이시설
에는 최대 2년)을 두어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현행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확대 대상 장소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피규제대상은 법적용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장소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설치업체)와 시설 관리주체임
 - * 설치업체는 신규 확대 대상장소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설 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 관리주체는 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 및 시설 개보수, 안전관리자 교육, 정기 점검, 보험 가입 등의 의무 발생
- 놀이기구 제조 및 놀이시설 설치업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차등규제가 필요하지 않음
- 놀이시설 관리주체로서 피규제 대상이 되는 과학관·수목원 중 민간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개인소상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동 규제 내용이 놀이시설 안전확보를 통해 놀이터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안전관리 의무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최대 2년)을 두는만큼 규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 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 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 모델
	판단 근거	놀이시설은 아파트·공원 등 설치 의무를 두고 있는 장소 외에는 관리주체의 필요에 따라 부대·편의시설로 설치되어 향후 규제대상 집단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신규 확대예정인 장소에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규모·매출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행 규제체계에 준하여 규제 차등화 여부 검토
④ 대상 업종		- 놀이시설 제조·설치업자 - 과학관, 수목원, 정원, 유원지 등 신규 확대대상 장소·시설의 관리주체
⑤ 예비분석내용		○ 규제대상 - 놀이기구 제조 및 놀이시설 설치업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 형성 - 공공 소유인 유원지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과학관, 수목원, 정원 중 51%(174개소)가 중소기업 및 개인·소상인이 포함된 민간이 운영 ○ 유사 사례 - 승강기안전법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사업장의 규모, 관리주체와 관계없이 검사, 교육 등 동일한 안전관리 준수 의무를 적용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이 적용되는 장소유형중 공공시설(학교, 도시공원 등)과 민간시설(식품접객업소, 종교시설 등)간에 운영주체 및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차등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차등화 여부 - 본 개정안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공공성이 큰 시설에 설치되는 놀이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배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부대·편의시설로 설치운영되는 놀이시설의 설치시 필요한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수에 따른 차등화는 불필요하며, 사업장의 고용과도 관련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에 맞는 놀이시설 설치 및 검사·교육 등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와 관련이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 안전관리 적용이 필요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신산업·신기술과 관련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 적용 대상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공공성이 크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장소유형에 대해 제한적으로 안전관리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네거티브리스트 적용대상 아님
사후 평가관리		설치시 확보되어야 할 안전기준으로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안전기준을 특정 장소 유형에 제한적(나열식)으로 적용한 타법사례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증(BF) 의무를 규정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규정
 -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 ** 예) 공원 -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 유도설비 등
- 인증 의무 대상시설* 및 인증평가항목(편의시설 기준)** 규정
 - * 19개 분야의 시설(문화, 종교, 판매, 운동 등),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학교, 의료원
 - ** 접근로 폭·경사, 주차공간 면적,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등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불특정다수가 방문·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야영장, 자연휴양림, 도서관, 박물관 등 유사 장소에 이미 시행중인 안전규제이며, 유예기간(최대 2년)을 두고 있어 준수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박물관, 자연휴양림 등 법을 이미 적용하여 시행중인 시설·장소와 동일한 안전관리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며, 대상의 확대 규모(전국 5천여개의 장소가 추가됨), 유예기간(최대 2년) 등을 고려시 집행에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집행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 연구
 - * '22.5월~9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관계기관 사전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 * (기간) '23.9월
 - (참석) 확대대상 장소 소관부처(과기부, 산림청 등), 지자체(경기, 충북), 전문가 등
 - (결과) 유원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장소유형 추가 확대 필요
- 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 조화
 - * '23.10.16 ~ 10.26 / 별도의견 없음
- 입법예고
 - * '23.11.21 ~ '24.1.2 / 별도의견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대대상 장소유형의 안전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 연간 사고현황 분석을 통해 사고발생현황 및 추세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실태와 입법효과를 비교 검토
- 별도의 지침·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저감될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상시 안내·관리

3. 종합결론

- 어린이의 놀이활동은 아파트단지, 학교 및 공원 등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복지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 여가시설 전반에 폭넓게 확대되고 있음
- 본 규제는 상기 장소를 포함한 20개 장소유형 외의 장소에도 놀이터가 확대 설치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 공공놀이터로서 안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과학관, 수목원 등에도 안전검사 및 교

육 등 현행 안전관리체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 법 적용 대상 장소 유형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장소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 피규제집단의 규제순응도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장소유형 추가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9.88		109.8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09.88		109.88
기업순비용		109.88	연간균등순비용	13.88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장소유형 추가 확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시설 관리주체
활동제목	놀이시설 개보수
비용항목	설비
비용	109,887,594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시설보수비용 X 연간 1회 X 필요시설수(40000000*1*3)
근거설명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시 안전기준에 맞게 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비용 발생 <사전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존에 설치된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규제비용 산정> - 확대예정인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수 : 170개 - 현행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불합격률 : 5.8% - 내구연한(10년)을 초과한 노후 시설 개수 : 22%(38개 /170개) 상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대 예정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170개)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수를 10개소로 가정하였으며, 이중 노후 시설인 22%에 해당하는 3개 시설의 전면 개보수(놀이기구 및 바닥재 교체 시공)시 필요한 직접비용 산정 : 40백만원* x 3개소 = 120백만원 * (놀이터 면적 300㎡, 조합놀이대(8백만원), 흔들놀이기구 2식(1.3), 그네(1.8), 기타(2), 바닥재(23), 그외 시공비(10%) 가정) 상기 시설물 개선조치 외에 규제 시행후 설치될 놀이시설에 적용되는 검사 수검, 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 의무 준수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활동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편익항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저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안전검사 및 교육 등 어린이놀이시설법상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적용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공공성이 높은 놀이터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정성)영향집단명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등 일반 국민
활동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편익항목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관리주체에 의해 안전검사 및 교육 등 어린이놀이시설법상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공공성이 높은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음